

# 선을 위한 관할 이사회 위원들을 위한 베스트 10 가지 조언

- 01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자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선기관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. 확실치 않은 경우, 여러분의 행동이 자선기관의 자선 목적을 촉진시키는지 여부를 자문해 봅니다.
- 02 여러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자선기관의 모든 사람이 자원봉사자이든 회원이든 이사회 위원이든 고객이든 혹은 피고용인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잘 주지하도록 확인합니다.
- 03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기관의 재정 내역을 숙지합니다. 이사회의 모든 회원이 기관의 재정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공동 책임을 집니다.
- 04 이사회 회원으로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어려운 결정일 때 이사회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법적 의무를 명심합니다.
- 05 여러분의 규정 사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를 읽고 이해하며 준수하고 확실치 않은 사항이 있으면 다른 이사회 회원에게 문의하거나 전문적 조언을 구합니다.
- 06 이사회 회원이 그룹으로 행동할지라도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른 이사회 회원에게는 다른 견해로 비칠지라도 항상 여러분의 기관에 최상이 된다고 여기는 것을 해야 합니다.
- 07 (ACNC 및 기타 규제기관 등) 정부 기관에 대한 여러분의 기관의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합니다.
- 08 다른 이사회 회원들을 경청하고 팀의 일원으로 일합니다. 여러분의 이사회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단체 책임을 지며 여러분은 이사회 회원을 동료로 간주해야 합니다.
- 09 이해 상충을 책임감 있게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집니다. 대부분의 이사회 회원들은 이해 상충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.
- 10 항상 여러분의 기관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. 이사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기관의 이익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보다 우선시할 책임을 가집니다.

## ACNC에 연락하십시오

전화: 13 ACNC (13 22 62)

이메일: [advice@acnc.gov.au](mailto:advice@acnc.gov.au)

우편: Advice Services, Australian Charities and Not-for-profits Commission, GPO Box 5108, Melbourne VIC 3001

팩스: 1300 232 569

영어 이외의 언어로 본 협회와 연락할 경우 무료 통번역서비스 (TIS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TIS에 13 14 50으로 전화하여 통역사에게 본 협회에 13 22 62로 전화하도록 요청하십시오.

© Copyright 2015

여러분은 이 자료를 원하는 대로 복사, 각색, 수정, 전송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(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ACNC 혹은 연방정부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서비스나 상품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기게 해서는 안됩니다).

이 발간물은 2015년 6월에 현재의 내용입니다.